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3월 6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”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위촉 범위를 수정하고, “부위원장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이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으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촉 위원 범위를 수정하고,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이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 교부된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함(안 제8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,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”을 “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, 위촉직위원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2.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청소년단체·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
3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,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제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6조제6항 중 “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제7조의 제1항 제3호”를 “제7조제1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환수할 수 있다”를 “환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6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,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 중 1명</p> <p>2.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전·현직 공무원</p> <p>3. 서울특별시 관계자 및 관련 민간단체 임원 등</p> <p>4. <신설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⑦ ~ ⑩ (생략)</p> <p>제8조(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대해 제7조의 제1항 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</p> <p>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</p> <p>2.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청소년단체·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</p> <p>3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,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4.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③ ~ ⑤ (원안과 같음)</p> <p>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⑦ ~ ⑩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8조(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대해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 <p>④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학습지원 프로그램”이란 학력인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4.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2.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·민간단체·청소년단체·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
3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,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4.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학교 밖 청소년 업무담당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

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품위 손상 등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·기피·회피 된다.

1.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교육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준비

3.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
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대해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④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직업체험 및 훈련 지원)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
2.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안내
3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상담지원)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, 진로상담,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설치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·효과적·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(이하 “도움센터” 라고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② 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6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③ 교육감은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도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